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24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만, 송수연

변론 종결2023. 5. 18.

판결 선고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7.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1,704,2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704,2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7.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D는 2017. 3. 9. C에게 8,0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 각 연 27.9%, 변제기 2022. 3. 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7. 12. 2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1. 10.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8898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323,724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2. 5. 3. 현재 원리금 합계 19,208,918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2) 주식회사 E은 2010. 7. 28. C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39.8%, 연체이자 44%, 변제기 2014. 7. 2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5. 6. 1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7. 17.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5139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388,000원 및 그 중 3,022,060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2022. 5. 3. 현재 원리금 합계 16,576,382원 및 그 중 2,817,478원에 대하여 202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3) 따라서 원고는 2022. 5. 3.을 기준으로 C에게 합계 35,785,300원(=19,208,918원+16,576,38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 및 C은 부(父)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모(母) G의 자녀들인데, 망인이 2021. 3. 4.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G(2/7 지분), 피고(2/7 지분), C(2/7 지분)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나누어 부를 경우 각각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인데, 망인이 2021. 3. 4. 사망하자, G, 피고, C은 2021. 7. 27.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21.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① 2016. 8. 3.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7. 10. 17.자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8. 7. 17.자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1. 9. 10. 위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고(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각각 15,953,937원, 28,906,885원, 26,674,216원이었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65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1. 12.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J조합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1. 7. 27. 원고에 대한 2건의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K 상호저축은행, L, 국세청에 대한 대출금, 국세 등으로 원금 기준 합계 44,786,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각 2/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M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조합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C에 대한 N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에 따라 2022. 12. 21.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4,540,792원으로 조정되었고 C은 그에 따라 조정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더 이상 계속 유지 내지 진행할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위원회가 C의 신청에 따라 그에 대한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 12. 21.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합계 4,540,792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C은 2023. 2. 26.부터 현재까지 조정된 원리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나타난 C과 N위원회 사이의 개인채무조정 합의서에 의하면 C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조정 전에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N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변경 내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더 이상 유지 또는 진행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2/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H 명의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C의 책임재산 상당액인 31,704,274원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2/7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1. 3. 21.부터 2021. 2. 18.까지 차남인 C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¹⁾을 입금하였고, C은 망인에게 4회에 걸쳐 4,200,000원²⁾을 입금한 사실, 망인은 2016. 8. 3. C의 처 O에게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O은 2017. 7. 10. 망인에게 3,6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망인은 장남인 피고에게 2019. 10. 18.부터 2021. 2. 1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1,250,000원³⁾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2017. 10. 3.부터 2021. 2. 24.까지 약 26회에 걸쳐 합계 33,262,000원⁴⁾을 입금한 사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133,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27,751,200원이었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H에 대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액수는 합계 74,985,973원(=17,193,972원+30,646,220원+27,145,781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C 및 그의 처 O에게 입금한 돈에서 망인이 C 및 O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합계

49,400,000원(=27,200,000원+30,000,000원-4,200,000원-3,600,000원)은 그 지급 액수, 지급 시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C에게 생전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의 경우 망인이 피고에게 입금한 돈에 비하여 망인이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더 많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은 없다고 할 것이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배우자인 G에게 꾸준히 돈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수시로 돈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개별 거래 금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에 비추어 망인이 G에게 입금한 돈은 부부 사이에 일상생활비 용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 가액

85,765,227원(=133,000,000원+27,751,200원-74,985,973원)에다가 망인의 C에 대한 생전 증여 가액 49,400,000원5) 을 합산한 135,165,227원에 C의 법정상속분 2/7를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 38,618,636원(=135,165,227원×2/7,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에서 C의 수증재산인 49,400,000원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C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 되므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철환

별지

- 1) 망인은 C에게, ① 2011. 3. 21. 1,400,000원, ② 2014. 11. 25. 2,000,000원, ③ 2015. 5. 20. 2,000,000원, ④ 2017. 6. 12. 3,000,000원, ⑤ 2018. 7. 16. 1,000,000원, ⑥ 2019. 8. 2.

2,200,000원, ⑦ 2020. 1. 12. 900,000원, ⑧ 2020. 1. 13. 4,800,000원, ⑨ 2020. 1. 14. 5,000,000원, ⑩ 2020. 8. 13. 1,300,000원, ⑪ 2021. 2. 18. 3,6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소액 또는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제외).

2) C은 망인에게, ① 2013. 12. 30. 500,000원, ② 2020. 5. 15. 1,500,000원, ③ 2021. 2. 15. 2,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소액은 제외).

3) 망인은 피고에게, ① 2019. 10. 18. 1,400,000원, ② 2020. 1. 12. 900,000원, ③ 2020. 1. 15. 1,500,000원, ④ 2020. 8. 29. 500,000원, ⑤ 2020. 8. 31. 450,000원, ⑥ 2020. 9. 9. 1,000,000원, ⑦ 2021. 1. 11. 8,000,000원, ⑧ 2021. 2. 5. 2,000,000원, ⑨ 2021. 2. 10. 5,5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소액은 제외).

4) 피고는 망인에게, 2017. 10. 3. 500,000원, 2018. 3. 7. 600,000원, 2019. 5. 4. 1,300,000원, 2019. 6. 5. 1,500,000원, 2019. 7. 5. 1,500,000원, 2019. 8. 4. 2,422,000원, 2019. 9. 5. 1,500,000원, 2019. 10. 5. 1,800,000원, 2019. 10. 21. 2,000,000원, 2019. 11. 6. 1,500,000원, 2019. 12. 5. 1,000,000원, 2020. 1. 6. 1,000,000원, 2020. 2. 5. 1,140,000원, 2020. 2. 21. 300,000원, 2020. 3. 5. 1,000,000원, 2020. 4. 5. 1,500,000원, 2020. 5. 6. 300,000원, 2020. 6. 5. 1,300,000원, 2020. 6. 6. 200,000원, 2020. 7. 5. 1,000,000원, 2020. 8. 6. 1,000,000원, 2020. 10. 5. 1,200,000원, 2020. 11. 5. 1,500,000원, 2020. 12. 5. 1,500,000원, 2021. 1. 6. 2,000,000원, 2021. 2. 24. 2,7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소액은 제외).

5) 증여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나, 증여 시점이 개별 금액 별로 상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특히 증여 금액 중 대부분이 망인의 상속개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별도로 환산하지 않기로 한다.